

신한은행 앞

본인("고객")은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의 방법 등으로 은행에 전달하는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은행이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아래의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1조 원격거래 서비스 개요

"원격거래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원격 수단을 이용하여 연결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자금이체(등)을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은 본 약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 완료 후 새로 만든 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원격수단을 이용하여 실명확인 절차 없이 연결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자금이체에 관한 거래지시를 은행에 할 수 있고, 은행은 본 약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고객의 거래지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약정에 의해 지정된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는 기본적으로 비밀번호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계좌"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마치고 새로 만든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계좌로서 본 원격거래서비스를 약정할 때 지정하거나 "원격거래 약정내용 변경 신청서" 또는 녹취되는 전화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계좌"라 함은 근거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전화, 팩시밀리, 전자문서, 영업점 방문 등을 이용하여 근거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새로 만든 고객 명의의 정기성 계좌로,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말한다. 연결계좌는 원격거래 약정 후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 없이 새로 만들 수 있으며, 운용계좌에 대해서 원격거래서비스를 약정할 때 연결계좌로 지정하거나, "원격거래 약정내용 변경 신청서" 또는 녹취되는 전화를 통해 연결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 금액(이자 포함)은 연결된 근거계좌로 입금된다.
3. "운용계좌"라 함은 본 약정과 관계없이 고객이 보유한 예금 계좌를 말한다.
4. "대면하여"라 함은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직접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은행 지점이 아닌 장소에서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원격수단"이라 함은 전화,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포함) 등 위에 제4호의 대면으로 하는 방식을 제외한 거래지시 수단을 의미한다. 또한 "원격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원격거래", 근거계좌와 연결계좌를 통칭하여 "원격계좌"라 한다.
6. "은행"이란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의미한다.
7. "화신전화 연락처"란 은행이 고객의 원격거래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의 전화번호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유선·무선 전화번호를 의미한다. 다만, 본 약정서 체결 이후 고객이 화신전화 연락처를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화신전화 연락처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화신전화 연락처'는 '화신전화' 연락처와 같은 의미이며 '고객지정사항'에 해당한다.

제3조 원격거래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원격거래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격거래서비스를 위해서는 은행직원과 대면하여 원격거래서비스를 위한 약정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비대면 채널에서도 동서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2. 원격거래서비스를 위한 약정서 및 관련서류는 필요한 사항을 모두 고객(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3. 은행의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은행거래신청서 및 모든 서류를 근거로 글로벌외환센터에서 통장 및 비밀번호 없이 근거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다.
4. 글로벌외환센터에서 원격거래서비스 약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녹취되는 전화회선을 통하여 사전(약정서 작성 및 제출 할 때)에 지정된 연락처로 확인전화를 실시하고 모든 서류의 본인작성 여부와 지정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 만든 근거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영업점에서 만든 계좌에 대해서도 원격거래서비스를 위해 비밀번호를 새로이 등록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거래지시 조건

고객은 은행에 원격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이 적용됨을 동의한다.

1. 고객은 고객의 지시사항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화신전화 연락처를 사전에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거래지시에 대한 본인 확인과 거래의 정당성 파악을 위하여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은행은 본인확인을 위해 녹음이 되는 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통해 근거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은행이 요청한 고객지정사항 등의 정보를 고객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할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4. 고객의 지시사항은 통장과 비밀번호의 입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격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전화에 의한 거래지시의 경우 은행이 지정한 화선(연락처)으로 거래의 지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화선은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녹음 및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6. 팩시밀리(또는 홈페이지 접수 등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지시의 경우 고객은 "원격거래 지시서" (등)을 은행이 지정한 팩시밀리번호(또는 홈페이지 접수 등 전자문서 방식)로 송부하여야 한다. 고객은 원격거래 지시서를 송부한 후 은행에 전화하여 원격거래 지시서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본 원격거래서비스의 약정에 의한 가입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전자문서 방식의 거래지시는 은행의 홈페이지(www.shinhan.com) 「글로벌외환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원격거래 거래지시 범위

원격거래서비스 약정에 의한 거래지시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련법률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나 범위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행 1개월전에 홈페이지 게시 및 지정된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해지하는 업무의 지시
 - ① 근거계좌의 신규 및 해지에 관한 거래 지시
(근거계좌의 신규는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등 계좌를 새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관련서류를 보내온 경우에 한함)
 - ② 연결계좌의 신규 및 해지
2. 원격계좌간 자금 이체에 관한 거래 지시
 - ① 근거계좌와 연결계좌 상호간의 자금이체(연결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한 자금이체 및 연결계좌의 해지에 따른 자금 이체 포함)
 - ② 근거계좌 상호간 자금이체(근거계좌의 해지에 따른 자금이체 포함)
3. 근거계좌와 운용계좌간 자금이체에 관한 거래 지시
 - ① 근거계좌에서 운용계좌로의 자금이체(운용계좌에서 근거계좌로의 자금은 제한)
4. 해외송금 관련 거래지시
해외송금 한도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로 한다.
 - ① 고객의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해외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
 - ② 해외송금과 관련한 환율 및 수수료는 처리시점의 '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을 적용하며,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송금수수료, 전신료 등)는 고객의 근거계좌에서 인출한다.
5. 기타 금융정보제공 및 모든 신고 사항 등

제6조 원격거래 제한 사항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와 관련된 거래는 글로벌외환센터 및 원격거래 약정을 관리하고 있는 영업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격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지시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제한이 있음을 인지한다.

1.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형태의 자금인출(ATM포함) 거래지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연결계좌의 자금 인출(해지)에 관한 거래지시는 원격거래약정에 의해 지정된 근거계좌로의 입금만 가능하다.
3. 연결계좌 신규를 위한 자금이체는 지정된 근거계좌의 인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실명확인자	담당자	확인자	전결권자

4. 연결계좌 상호간, 운용계좌 상호간, 연결계좌와 운용계좌간 자금 이체는 불가하다.
5. 기타 개별 상품과 관련된 법률 및 당행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거래지시에 관한 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는 제한된다.
6. 국내 영업시간 이후의 원격거래지시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 국내 영업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 기타 채무부담행위(질권 및 담보권 설정 등)를 하는 것은 원격수단으로 할 수 없다.
8. 새로 만들기로 요청된 연결계좌의 금융상품이 관련 법령 및 은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한 모든 준수사항이 완료되지 않는 한 고객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9. 제5조의 4항(해외송금 관련 거래지시)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정당성 확인 및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지시를 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시사항의 확인 및 통지

1.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전자문서(홈페이지 접속 포함) 또는 팩시밀리 등에 의해 지시사항을 수령한 경우 고객에게 녹음이 되는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본 약정(서)에 따라 고객에게 의하여 지정된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하여 거래지시 내용과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확인 전화'는 은행이 별도로 정한 지침을 따른다.
2.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은 해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은행이 1항에 근거하여 회신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은행이 고객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고객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경우 은행은 동 전화로 '확인전화'에 갈음하여 지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만, 은행은 '확인전화'가 완료되지 않아도 거래의 지시내용이 아래와 같고 해당 전결권자의 별도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 ① 만기가 도래한 연결계좌의 예금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 가입 하는 경우
 - ② 기존거래와 형태가 같은 원격계좌 상호간의 거래인 경우
 - ③ 기존거래와 형태가 같은 약정 등록된 본인명의 계좌로의 해외송금
 - ④ 고객이 응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처리 시한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은행은 고객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이행된 거래결과(원격거래확인서)를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격거래확인서의 발송을 대신하여 녹취되는 전화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6. 지시사항 이행시 "고객이 '원격거래확인서'를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은행은 고객이 확인서의 내용과 지시사항이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위 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내용과 지시사항이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비밀번호관리

1. 본 약정(서)에 따라 지정된 원격계좌의 거래에 있어서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글로벌비화센터(등)에서 거래지시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서 근거리계좌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 고객은 ARS 음성안내에 따라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번호를 5회 연속하여 오류입력 한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2. 기존의 근거리계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재등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원격거래) 약정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격거래서비스에 있어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거리계좌의 비밀번호 전체를 구두로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결계좌에 비밀번호를 부여(운용계좌로의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내부통제지침에서 정한 비밀번호를 신고하는 절차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통장 관리

1. 근거리계좌 및 연결계좌의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창구에 내치하여 요청하는 경우 본인 및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행 가능하다. 이 경우 고객에게 교부된 통장은 거래내역 열람 및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제5조에서 정한 원격거래와 관련된 업무처리 외 통상적 은행거래(운용계좌로의 전환)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2. 고객은 근거리계좌 및 연결계좌의 '계좌조회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고객의 통지 의무

고객은 본 약정서에 기재된 회신전화 연락처, 팩시밀리 번호, 이메일 주소, 여권(유효기일)갱신, 기타 거주국가 등 고객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의 범위

본 약정(서)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수익 기회의 상실 등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는, 그러한 은행의 행위가 본 약정서에 따라 은행에게 주어진 권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는 한, 은행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이 제10조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은행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수수료

고객은 본 약정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약정의 갱신 및 해지

본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은행은 본 약정서에서 정한 고객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거나, 거래의 단절 등 더 이상 원격거래서비스의 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당사자의 자산과 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정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서 약정의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는 녹취되는 전화 혹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본 약정서의 적용을 받는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고 근거리계좌 및 연결계좌에 대해 비밀번호 지정 또는 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거래서비스의 약정을 전화 혹은 '원격거래약정내용변경(등)신청서'로 해지(요청)할 수 있다.
6. 글로벌비화센터에서는 고객이 최종 업무종료 후 2년간 거래가 없을 경우 장기미사용 거래제한 등록 후 통보하며,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상기 해지 절차를 준용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녹취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진행 후 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 후 약정을 유지할 수 있다.

제14조 약관(약정서)의 변경

1. 은행이 이 약관(약정서)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한다. 또한 은행은 이 약관(약정서)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이후 언제든지 약정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위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약관(약정서)의 적용 우선순위

1. 은행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약정서)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각 예금 별 개별약관, 외국환거래법령, 외환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

제16조 준거법

이 약관(약정서)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 고객 지정사항 (※모든 내용은 본인(명의)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신받을 연락처 (국가, 지역번호 포함 기재) ※ 최우선 연락번호에 V 표시 하세요. ※ 기재하신 연락번호(약정 연락번호)로 본인과 통화 후 약정이 완료 됩니다.		사용할 기본 계좌번호 (근거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 혹은 외화 계좌) 또는 ☐ 근거계좌 신규 희망
☐ 휴대전화번호		
☐ 자택전화번호		
☐ (회사)전화번호		
e-mail 및 팩스번호	@	FAX.
주소	해외 : (POST CODE)	영 문 작 성
	한국 : (우편번호)	한 글 작 성
기타 전달사항		

- ※ 전화번호 및 e-mail 은 업무처리를 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이므로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누락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e-mail 및 휴대전화 등이 없는 경우 거래내역 정기통보 및 중요한 공지사항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용할 기본 계좌(근거계좌)가 없는 경우 근거계좌 신규 희망에 V 표시하세요. (예금거래신청서 별도 작성)
- ※ 기타 전달사항에는 전화통화가 용이한 시간대(한국시간 기준) 등 연락처 관련 요청사항을 기재하세요.

■ 해외송금 지정사항 (영문으로 작성)

송금의뢰내용 (영문기재)	지정계좌	수취인	예금주명 : (본인 명의만 가능)		
			주소 :		
			전화번호 :		
	수취인 거래은행		은행명 :	지 점 명	
			주소 :		
			은행번호(ABA No, IBAN 등) :	SWIFT BIC	
		수취인 계좌번호 :			
지급사유	☐ 대외계정(외화예금) 혹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원화예금) 인출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 해외이주비 ☐ 기타 ()			기 타 (전달사항) 국외수수료 ☐ 수취인 or ☐ 신청인 ()	
	1 회 송 금 한 도 설 정	USD	• 송금은행 영업일 기준 1회 송금한도를 미화(USD)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한도설정이 없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등)에서 정한 범위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 ※ 해외송금은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관리영업점에 방문하여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 ◆ 수취인 거래은행이 신한은행 해외 영업점인 경우 주소 생략하셔도 됩니다.

■ 원격거래확인서(거래결과 통보)에 대한 지정

구분	통보시기	수령희망 여부 ('희망함'을 권장함)		수령방법	
건별통보	거래할 때 마다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이메일 ()	팩스 ()
정기통보	분기 1회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이메일 (팩스 불가)	
SMS통보	주요 거래내역 및 각종 지정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SMS(휴대폰 문자 발송 서비스)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청사항	• 원격거래확인서 수령과 관련하여 전달(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통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메일 통보합니다.)				

- ※ 은행에서의 원격거래확인(거래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보안기능이 있는 이메일로 통지가 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번호, 계좌번호 등은 일부의 내용이 마스킹(*)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건별통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정기통보는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합니다.)
- ※ (건별)원격거래확인서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거래 후 결과에 대한 (건별)통지가 기본적으로 생략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 받는 것이 좋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합니다.)
- ※ 정기통보의 경우 매 분기 다음 월 중에 일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정기통보는 이메일 통지만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질의문

질문서 중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 작성하는 개별 질문 최소 1개 이상과 일반질문 4개 이상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작성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 5가지 이상 답변을 작성하시되 동일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은 향후 원격거래를 할 경우에 본인확인을 위해 순서 없이 사용(질문)되며, 답변이 틀릴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이고 상세한 내용(개별질문 위주)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구분	NO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본인이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
개별질문 (직접작성) (1개이상)	1	(질문) 직접 작성	
	2	(질문) 직접 작성	
	3	()의 () 이름은?	
	4	본인의 () (세)때 거주 하던 곳?	
	5	(초 등)학교 () 학년 때 ()선생님 성함은?	
일반질문 (4개이상)	1	본인의 어머니 성함 (또는 고향)?	
	2	사회보장번호?	
	3	나의 출신 초등학교?	
	4	본인의 출생지?	
	5	나의 보물 1호는?	
	6	가장 존경하는 인물?	
	7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팀 또는 선수 또는 종목)	
	8	가장 좋아하는 색(color) 또는 음식?	
	9	좋아하는 숫자?	
	10	나의 실제 생년월일?	

위의 고객 지정사항 등 모든 정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본인(명의)의 정보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특히 지정 e-mail 계정(혹은 지정 팩시밀리번호)은 본인(명의)의 정보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확인서 등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계정을 이용함에 있어 은행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해당 계정을 본인의 명의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행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해당 채널을 통한 금융정보의 통지는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 약정서에 정한 원격거래서비스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계좌의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자격 도용 또는 기망에 의한 거래지시, 본인 확인 절차상 문제발생으로 거래 지시가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 처리되는 경우 등)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약정서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효력 및 효과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은행이 고객 서명의 진위 확인에 관하여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및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다만, 무단 거래 등 사고의 발생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함)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과 은행간의 모든 전화통화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지시사항 및 확인사항에 국한하지 않음)를 은행이 녹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에 성과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또는 도장을 찍음)을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거래지시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
	실명확인증표상 생년월일	년 월 일		

문의 : 글로벌외환센터(Overseas Koreans Center) TEL : (+82)1577-8616 FAX : (+82)505-189-0088 e-mail : OK365@shinhan.com

주소 : OK Center, SHINHAN BANK 251, Yeoksam-ro, Gangnam-Gu, Seoul 135-514, Korea

본인 및 자서확인	소속 :	직위 :	직원번호 :	성명 :	인
-----------	------	------	--------	------	---